



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
효력을 갖는다.

제1417호 2019. 12. 16.(월)

공 고

○ 「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-- 2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목포시 공고 제2019-1757호

입 법 예 고

『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16일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“목포해양수산물복합센터”와 “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”의 명칭이 다른 수산물 관련 시설물들의 명칭과 유사하여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물 특성을 살린 알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 추진
- 「목포시 수산물 관련 시설 명칭 제안 공모」를 실시한 결과 “목포해양수산물복합센터”를 “목포활어회플라자”로, “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”를 “목포건어물젓갈센터”로 선정하여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목포해양수산물복합센터”를 “목포활어회플라자”로, “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”를 “목포건어물젓갈센터”로 명칭 변경.

3. 개정 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: 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(심의) 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없음

7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8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9. 입법예고 : 2019. 12. 16. ~ 2020. 1. 6.(22일간)

10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수산진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:[우58613]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(수산진흥과)]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수산진흥과(☎ 061-270-8547, FAX 270-365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조례 제 호

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”를 “목포활어회플라자”로, 같은 조 제2호 중 “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”를 “목포건어물젓갈센터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”를 “목포활어회플라자”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“해양수산복합센터”를 “목포활어회플라자”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“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”를 “목포건어물젓갈센터”로 수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비행위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조례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사업)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수행한다.	제8조(사업) ----- ----- -----.
1. <u>목포 해양수산 복합센터</u> 운영 · 관리에 관한 사업	1. <u>목포활어회플라자</u> ----- -----
2. <u>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</u> 운영 · 관리에 관한 사업	2. <u>목포건어물젓갈센터</u> ----- -----
3. · 4. (생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위탁) ① · ② (생략)	제17조(위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의 승인을 얻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를 우선 입점하게 할 수 있 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</u> 의 우선 입점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입점시에만 적용한다.	1. <u>목포활어회플라자</u> ----- ----- -----.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가, 다목의 희망업종이란 <u>해 양수산복합센터</u> 의 직판장과 식당코너를 말하며, 동일업종 이란 활어수산물의 즉석판매 제조업자의 횃집을 말한다.	라. ----- 목 <u>포활어회플라자</u> ----- ----- -----.
2. <u>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</u> 의 우선 입점자는 건·해산물 및 젓갈관 련 등록법인으로 할 수 있다.	2. <u>목포건어물젓갈센터</u> ----- ----- -----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